



보도	2024.12.9.(월) 14:00	배포	2024.12.9.(월)		
담당부서	금융IT안전국 전자금융검사팀	책임자	국 장	백규정	(02-3145-7121)
		담당자	팀 장	문상석	(02-3145-7140)

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1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4. 12. 9.(월) 전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「내부통제 워크숍」을 개최(서울 여의도 본원)하였음
- 전체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동 워크숍에는 준법감시·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약 220여명이 참석

전체 전자금융업자 현황 ('24. 11월말 기준)

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	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	전자지급 결제대행업	결제대금 예치업	전자고지 결제업	합계
85개사	24개사	159개사	44개사	16개사	198개사 (328개 업종)

내부통제 워크숍 개요

◆ 일	시	: 2024.12.9.(월) 14:00~15:30
◆ 장	소	: 금융감독원 본원 2층 강당
◆ 참	석	자 :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·내부통제 담당자 등 220명

-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
-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등 문제점 노출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번 워크숍을 실시하였음

2 워크숍 주요 내용

1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 안내

- (부정결제 사고 발생)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 위반*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되어 이를 통한 부정결제 사고 발생

* 공개용 웹서버·암호키·비밀번호 관리통제 미흡, 자체 보안성 검토 미 실시 등

- (장애대응 조치 지연) 비상 대응조직 구성·운용, 대응절차 수립·준수 미흡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정상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대국민 불편 발생

2 내부감사협약제* 점검과제를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

* 자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내부감사 과제를 선정·점검중이며,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빅테크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

- (성능관리 체계) 대고객 이벤트 유입 등 동시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4개 세부 점검사항* 선정

* ① 성능관리 절차 마련·운영, ② 임계치 단계 구분 및 단계별 대응방안, ③ 대형 이벤트 또는 신규 서비스 시행시 가용성 테스트 실시 ④ 긴급 전산지원 증설체계 마련·운영

- (오픈소스 S/W 관리체계)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취약하고,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반복되고 있어 오픈소스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정한 5개 세부 점검사항* 선정

* ① 오픈소스 관리를 위한 내규·절차 마련·운영, ② 오픈소스 사용 현황 및 관리 대장 목록 관리의 적정성, ③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적정성, ④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(보안, 버그 등)의 적정성, ⑤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취약점 관련 교육 시행

- (전자금융사고 보고 이행)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를 지연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3개 세부 점검사항 선정

* ① 전자금융사고 보고 이행의 적정성, ② 전자금융사고 보고시점의 적정성, ③ 전자 금융사고 보고 내용의 정확성 및 충실성

③ 가맹점 심사·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연루 사례

- **(불법 탈루 연루)**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하여 탈세·탈루 등 불법행위*와 연루된 사례

* 이른바 '절세단말기'를 통해 하위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하고 과도한 수수료 (약 7~8%)를 수취

- **(가상계좌 불법 이용)** 온라인 도박 등 연루 불량 가맹점을 걸러 내지 못해 전금업자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

※ 가맹점의 실제 영업여부·판매물품 확인 등 심사·관리 절차가 미흡하고, 계약시 불건전 행위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·방안 마련이 부족한데 주로 기인

④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근 제도 개선 추진 내용 및 취지 안내

- **(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조치)**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·영업정지·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신설
- **(정산대상금액 별도관리)** 정산대상금액의 100%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 마련

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□ 금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또한,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충분히 사전 공유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
-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워크숍·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